##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52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이수진・김병주・송옥주

추미애 • 정태호 • 한정애

서영교 · 송재봉 · 김정호

박선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 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 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 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무)
다음 각 호와 같다.	<u>.</u>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1
법」, 「근로기준법」,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	
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
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
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
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 ⑨ (생 략)

4
「산업현장 일
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 ⑤ ~ ⑨ (현행과 같음)